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1
----------	------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의자 : 최연혜 · 윤종필 · 윤한홍
김도읍 · 정운천 · 곽대훈
김정재 · 경대수 · 김규환
정태옥 · 백승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67조, 제69

조 및 제7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9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
사증의 교부

제7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 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 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자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67조(수수료)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u>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u>
14. (생 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73조(벌칙)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u>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